

일본의 제조물책임(PL)의 입법과 동향

글 · 윤준호 대표이사 이리스(주)

1. 입법경위

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우유사건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사건, 1969년 가네미 유증(油症)사건, 1971년 스펀 사건, 1975년 크로로킨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책임에 의해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구제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제는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스펀사건이나 가네미유증사건 등의 심각한 위해의 발생을 계기로 입법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였고, 1973년에는 국민생활심의회가 제조물책임제도를 포함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1975년에는 아치영(我妻永)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연구회가 1972년부터 검토한 결과를 받아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공표하였다.

1994년에 이르러 국민생활중시, 특히 소비자중시의 사고가 종래이상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는 점, 공적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조자, 소비자 쌍방의 자기책임원칙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점, 제품수입이 대폭 증가한 점, EU 지침에 의해 구주제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정당, 학계, 변호사회 등에서 법안이나 입법제안 등을 잇달아 제출하여 공표하게 되었다.

수년간에 걸쳐 소비자행정에 있어서 검토과제였던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6월 22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포되었다. 본법은 각계, 정당,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의 정력적인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부처에 해당하는 많은 성청의 관계심의회 등에서 이루어진 검토

를 전제로하여 관계성청이 연대하여 일체가 되어 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입법화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목적 ②제조물, 제조업자, 결함의 정의 ③제조물책임의 원칙 ④면책사유 ⑤기간의 제한 ⑥민법의 적용 등으로 전부 본문 6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1) 목 적

본법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불특정 다수를 보호한다. 따라서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도 피해구제청구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 및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정의(제조물, 결함, 제조업자 등)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전기와 같은 무형의 에너지 및 서비스는 제조물에서 제외되고 미가공의 농수축산물도 제조 또는 가공되지 아니한 동산이므로 제외된다.

결함의 정의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제조물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는 “①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②스스로 제조물에 자기를 제조

업자?수입업자로서 이름?상호?상표 기타 표시를 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등을 표시한 자 ③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형태 기타 사정으로 보아 그 제조물의 실질적인 제조업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이름등을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3) 제조물책임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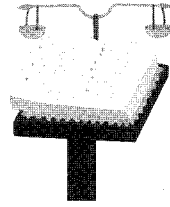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 제709조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요건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4) 면책사유

제조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자등이 그 제조물을 인도한 당시 즉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에서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개발위험의 항변이다.

둘째, 다른 제조물의 부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이나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여기서 부품이나 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EU지침에서 규정한 것과의 차이는 부품이나 원재료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부품이나 원재료제조업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담배나 의약품과 같이 장기간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5) 제소기간 및 소멸시효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또는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며, 제소기간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제소기간에 있어서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6) 민법의 적용

제조물책임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과실상계, 복수책임주체가 있는 경우의 연대책임, 면책특약을 한 경우의 효력배제와 금전배상의 원칙 등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게 된다.

사자숙어(四字熟語)

대의멸친(大義滅親) : 대의(大義)를 위하여는 사사로운 정은 희생시킴.

[유래] 춘추(春秋) 시대 위(衛)의 신하 석작은 주우의 역심을 꿰뚫어보고 아들 후(厚)에게 주우와의 접촉을 금했다. 마침내 주우는 위의 환공(桓公)을 죽이고 실권을 쥐었다. 그러자 후는 아버지더러 주우를 왕으로 추대하자고 청했다. 이때 석작은 아무리 쇠약했을망정 주(周)의 천자가 계시니, 진왕(陳王)의 주선으로 천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자고 일러, 아들 후를 주우와 함께 진(陳)으로 출발시켰다. 석작은 뒤이어 진(陳)에 밀사를 급파하여 두 사람은 역적이니 붙잡아 처형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진(陳)에 당도하는 길로 투옥되었고, 얼마 후 위의 사신이 일회하는 가운데 참수당했다. <左氏傳>

일자천금(一字千金) : 글씨나 문장이 더할 데 없이 훌륭함을 칭찬하여 이르는 말.

[유래] 전국(戰國)시대 진(秦)의 재상 여불위(呂不韋)는 인재를 얻으려고 천하의 선비며 논객(論客)을 후대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평소에도 삼천을 넘는 식객이 불렀는데, 여불위는 이들에게 견문한바를 기록하게 하여 책으로 엮었다. 20만자가 넘는 방대한 이 기록이 바로 「여씨춘추」(呂氏春秋)인데, 여불위는 이것을 도성 정문에 진열하고는 일자천금(一字千金), 즉 누구든지 이에 한자를 능히 가감하는 사람에게는 상금 천 냥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는 훌륭한 인재를 많이 거느리고 있음을 자랑할 겸 더 뛰어난 사람을 찾으려는 것이었는데, 결국 「여씨춘추」의 문장을 단 한 자 흠 잡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史記>